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채우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15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채우진 · 강동오 · 남해석

신종갑 · 이상원 · 이한동

차해영 · 최은하

1. 제안이유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PM) 화재는 총 627건 발생했음.

2025년 8월 17일 창전동 소재 아파트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중상 1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구청장이 직접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도록 해 마포구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조례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하

여 정의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
간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3.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5. 10. 2. ~ 10.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 확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편의향상 및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하는 충전기를 마련해둔 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 등을 말한다.
 -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 나.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 다. 소화기 등 소화기구
 - 라. 그 밖에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충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충전 방지 및 과전류 차단 기능을 갖춘 충전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5조(충전시설 설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정보영
연 락 처	02-3153-9643

【관 계 법 령】

지 방 자 치 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